재 1 장 총칙

제 1 조

본 동맹은 공화국의 문예로선과 총련의 문예방침을 받들고 재일동포 및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며 총련의 민족문화운동을 견인하는 재일조선문학예술가들과 문학예술애호가들의자원적조직이다.

제 2 조

본 동맹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라고 칭한다.

제 3 조

본 동맹의 본부는 도꾜에 두고 대 지구별 단위에 지부를 둔다.

제 4 조

본 동맹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각 급 회의 성립 및 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.

제 5 주

본 동맹의 위원 및 역원은 각급 회의에서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선출한다.

제 6 조

본 동맹은 재일본조선총련합회에 가맹한다.

제 7 주

본 동맹은 총련강령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조국의 문예성과작품 보급사업
- 2. 창작사업과 그에 따르는 저작권관리사업
- 3. 공연, 전시, 출판, 인터네트를 통한 정보발신사업
- 4. 민족성고수 및 군중문화사업
- 5. 신인육성사업
- 6. 통일문화사업
- 7. 대외문화사업

제 2 장 맹원의 권리와 의무

제 8 조

본 동맹의 가입은 동맹의 규약에 찬동하는 동포문학예술가 와 문학예술애호가들이 신청할수 있으며 문예동중앙 혹은 지 부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가입희망자는 동맹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소속하는 문예동조직 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

맹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가진다.

제 10 조

맹원은 동맹이 소정한 맹비(달 1000 엔)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.

제 11 조

맹원은 동맹이 실시하는 강습 사업에 참가하며 제반 결정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.

제 3 장 기관 및 역원의 임무

제 12 조

본 동맹은 중앙기판으로서 대회, 중앙위원회, 중앙상임위원회를 둔다.

제 13 조

대회는 본 동맹의 최고 결의 기관이며 4년에 1회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.

필요에 따라 림시대회를 소집할수 있다.

제 14 조

대회는 대의원, 중앙위원 및 제정 감사로 구성한다. 대의원 선출 및 의원수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중앙대회의 대의원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15 조

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중앙위원회 사업보고 심의결정
- 2. 사업 및 방침수립
- 3. 예산안 심의 결정
- 4. 규약의 심의 채결
- 5. 중앙위원,위원장,부원원장(약간명),사무국장 1명,재정 감사(약간명)선정

6. 기타 사업

제 16 조

중앙위원회는 다음 대회까지의 최고 결의 집행기관이며 위원 장,부위원장,중앙위원,중앙상임위원으로서 구성하며 중앙상임 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.

제 17 조

중앙위원회는 대회에서 결정한 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
- 1. 중앙상임위원회의 활동보고 심의 결정
- 2. 각종 건의안에 대한 심의 결정
- 3. 중앙상임위원회 선정
- 4. 대회 준비와 소집
- 5. 기타 사항

제 18 조

중앙상임위원회는 위원장,부위원장,사무국장 및 중앙상임위원 으로 구성한다.

제 19 조

중앙상임위원회는사무국, 문학부, 음악부, 미술부, 영화부, 연극부, 무용부, 사진부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20 조

각부에는 부장 및 부부장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.

제 21 조

위원장은 본 동맹을 대표하며 동맹사업을 조직한다.부위원장 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교시에는 이를 대리한다.

제 22 조

중앙상임위원회는 각 부서를 주제하며 요원 및 신규 가맹자의 비준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 23 조

중앙상임위원회의 전문부서는 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증감 할수도 있다.

제 24 조

재정감사는 동맹의 재정 정형을 검열하며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25 조

본 동맹의 역원의 임기는 4 년이며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이다.

제 4 장 지방기관

제 26 조

지부 총회는 소속 전체 맹원으로서 구성하며 지부에는 지부위 원장 및 위원을 둔다.

제 27 조

지방 지부 총회 규정은 중앙대회 규정에 준하며 중앙대회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후보를 선정한다.

제 28 조

지부 상임위원회에 판한 규정은 중앙상임위원회에 준한다.

제 5 장 상벌

제 29 조

본 동맹의 맹원으로서 조국과 인민 및 본 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.

제 30 조

본 동맹의 맹원으로서 동맹의 규약을 위반한 자는 대회의 결 의를 받아 이를 처벌한다.

제 6 장 부칙

제 31 조

본 동맹의 회계 년도는 6월부터 3년후의 5월말까지로 한다.

제 32 조

본 규약은 1959년 6월 7일부터 실시한다.

제 33 조

본 규약은 1961년 5월 25일 일부 수정 실시한다.

제 34 조

본 규약은 1964년 6월 10일 일부 수정 실시한다.

제 35 조

본 규약은 2022년 7월 3일 일부 수정 실시한다.